

우리 주류산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 目 次 ■

개혁 성과중 하나
인 주류산업 관련
각종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규제 완
화한 내용을 제대
로 알리고자 마련
하였으며 본고는
1998년 12월에 국
세청에서 배포한
제도자료 "주류산
업에 대한 규제개
혁" 전문을 인용하
여 게재하였음

- 편집자 주 -

I. 추진배경

II. 추진과정

III. 규제개혁의 주요내용

1. 주정신규제조면허 허용
2. 주정판매제 개선 및 가격고시제도 폐지
3. 주정생산 및 원료사용제한 폐지
4. 탁주 신규제조면허 허용 및 공급구역제한 철폐 등
5. 주류의 제조 및 판매면허 제한사유 객관화
6. 주류제조 시설기준 완화
7. 주류제조방법의 사전신고제 폐지
8. 주류제품별 규격제한의 개선
9. 국산주류상표 기재내용에 대한 규제완화
10. 리큐르원액의 제조 및 사용규제 대폭 완화
1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도 개선
12. 주조사 의무고용제도 개선 및 활동규제 폐지
13.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합리화
14. 주류판매업면허 통합
15. 주류통신판매의 금지개선
16. 주류제조·판매업자의 제조장·판매장이전시 사전신고 및 허가제의 개선
17. 주류판매업자의 주류판매가격신고제 폐지
18. 전통주 판매제한 완화
19.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제도 폐지
20. 사업자의 단체설립 및 가입제한제도 개선

IV. 맺는 말

I. 추진배경

- 주류산업에 대하여는 그동안 정확한 세수관리와 주류상품이 갖는 특성을 이유로 정부가 제조와 유통전반에 걸쳐 엄격한 통제를 해왔으나
- 과도한 보호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국제적 수준의 주류 상품개발노력 미흡, 주요 메이커의 경영부실 및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대응력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 특히 주요 주종이 수입의존형 시장으로 전락하는 등 주류산업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취약점이 나타나 제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따라서 금번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그동안 큰 변화없이 제도적 틀속에서 안주해온 주류산업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폭넓게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각종 규제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II. 추진과정

- '98. 7. 10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공개개최
- '98. 8. 14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진설)는 제9차 회의를 갖고 「주류분야 규제개혁방안」을 심의·의결함

III. 규제개혁의 주요내용

1. 주정 신규제조면허 허용

1) 현행제도

- 주정제조는 면허제이나 현재에는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 주정제조면허는 70년대 주정업체의 난립으로 과다경쟁, 불량주 및 탈세등이 발생하자 국세청에서 1973년 주정제조면허를 통폐합하고 신규면허를 동결

2) 문제점

- 신규진입의 제한으로 주정제조업체간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쟁의식이 미흡하고 소비자에 대한 개선노력도 소홀함
- 주세법의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장 훈령)으로 신규제조면허를 발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
- 주정산업에 대해 대외개방을 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제조자에 대해 신규면허를 동결하는 것은 모순임

3) 개선방안

- 신규제조면허 금지규정 삭제('98 시행)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삭제
- 면허 허용요건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하여 신규제조면허 허용('99 시행)

4) 기대효과

- 업체간 경쟁촉진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정수요자의 선택 확대

2. 주정판매제 개선 및 가격고시제도 폐지

1) 현행제도

- 주정도매업은 면허제이나 현재 1개업체(대한주정판매(주))에만 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주정제조업체는 의무적으로 도매업자를 거쳐 사용자에게 공급토록 제한
- 국세청장은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과 판매장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그 가격으로 주정을 판매토록함

2) 문제점

- 독점적인 주정도매업체가 주정사용자에게 주정을 독점공급 함으로써 주정사용자의 주정구입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
- 주정제조업체와 주정수요자간 직접 공급 관계를 원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중간유통비용 발생
- 주정가격의 고시는 법적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며, 업체간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노력을 저해

3) 개선방안

- 신규 주정도매면허 금지규정 삭제('98 시행)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 제5호 삭제
- 주정생산 및 판매에 경쟁도입 확대

<1단계>

- 현재의 대한주정판매(주)에 의한 독점공급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정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해 수출업체나 제조원가가 낮은 업체에 대한 수입조주정 배정물량 확대
- 매년 증가하는 수입조주정 물량(평균 전년대비 10% 수준증가)을 주정업체별 직전년도 수출실적과 단위생산원가 절감비율에 따라 배분

<2단계>

- 2000년까지 주정제조업체가 주류용 주정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한주정판매(주)에게 판매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주류용 주정을 제외한 주정(의약품·식품등의 비주류용)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대한주정판매(주)를 통한 판매실시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6조 개정
- 주정가격 고시는 가격상한제로 개선하되, 2001년부터 폐지

4) 기대효과

- 경쟁촉진을 통해 주정판매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정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 업체간 가격경쟁을 통한 경영효율 제고와 수요자 후생증대

3. 주정생산 및 원료사용 제한 폐지

1) 현행제도

- 국세청장이 매년 주정제조업체별 주정생산량 및 소요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정함

2) 문제점

- 주정생산량을 정부가 정해줌으로써 사업자의 핵심적인 사업활동 내용을 제한하고, 업체간의 자율경쟁을 저해
- 주정업체들의 자율적인 원료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제조기술의 개선, 다양한 제품개발 및 가격인하 노력등을 저해

3) 개선방안

<1단계>

- 주정회사별 주정생산량 배정제도를 폐지(2000년까지)
- 생산량 배정 관련제도는 국산농산물 배정제도가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2000년까지 존속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3조 내지 제55조 삭제 또는 개정

- 국산원료 배정제도 및 국산원료 배정과 연계한 수입조주정 배정제도는 현행체제 유지

<2단계>

- WTO등의 농산물협정에 따른 농산물개방 여건변화등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검토
- 국산원료 배정제도 폐지

4) 기대효과

- 주정업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정업체간 자율경쟁 촉진

4. 탁주 신규제조면허 허용 및 공급 구역제한 철폐등

1) 현행제도

- 탁주의 제조는 면허제이나 현재에는 신규제조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함
- 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
- 탁주에 식물약재를 물료로 첨가하는 것을 제한

2) 문제점

- 신규진입 및 공급구역의 제한으로 경쟁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주질개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여 전체 탁주산업의 사양화 원인으로 작용
- 신규제조면허 봉쇄는 법적 위임의 한계를 일탈함
- 탁주에 식물약재를 첨가하여 주질개선 등을 도모하는 것을 제약

3) 개선방안

- 탁주의 신규제조면허를 금지하는 규정삭제('98 시행)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
- 2000년까지(예고기간) 공급구역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신규면허 허용('99 개정)
- 탁주에 인삼등 식물약재첨가 허용('98 시행)
 - 주세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2호 개정

4) 기대효과

- 신규진입 등을 통한 경쟁여건 조성으로 탁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

5. 주류의 제조 및 판매면허 제한 사유 객관화

1) 현행제도

- 단속상 부적당하거나,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면허제한

2) 문제점

- 객관적이지 않은 면허제한 요건이 진입제한 요소로 작용

3) 개선방안

- 면허제한 사유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규정('99 개정)
 - 주세법 제10조제8호(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를 투명하고 객관적인 요건으로 개정
 - 주세법 제10조제10호(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중 "제조분야의 조정상"면허제한 요건을 삭제하고, "판매분야의 조정상"면허제한 요건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정

4) 기대효과

-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진입 가능

6. 주류제조 시설기준 완화

1) 현행제도

- 맥주등에 대한 제조면허 부여시 과도한 시설기준 요구
- 탁·약주제조용기는 스테인리스스틸 또는 법랑탱크로 제한

2) 문제점

- 시설기준이 해당주류의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시설항목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규모 생산능력까지 요구하고 있어 중소제조업자의 신규참여 제한

3) 개선방안

- 주류제조 시설기준의 대폭완화('98 시행)

- 건물면적등 불필요한 시설기준은 삭제하고, 꼭 필요한 시설을 기준으로 최소한으로 규정
- 주세법시행령 별표1을 대폭 개정
- 탁·약주 제조용기 재질 제한 최소화 ('98 시행)
- 항아리, 나무통, 알루미늄등의 제조용기 사용허용
- 4) 기대효과
 - 중소제조업자들의 신규참여를 통한 경쟁 촉진 및 다양한 주류의 제조

7. 주류제조방법의 사전신고제 폐지

- 1) 현행제도
 - 주류의 제조방법의 신규 또는 변경시 주류제조자가 사전에 세무서에 신고하여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함
- 2) 문제점
 - 제조방법신고제는 주세보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주류 신제품개발과 신규제조기술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국세청기술연구소의 제조방법 검토기준이 보수적이므로 다양한 제품개발이 불가능
 -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로서 법적 위임의 한계를 일탈함
- 3) 개선방안
 - 제조방법 변경 등 사전신고시 신고서 제출기간을「30일전」에서 「15일전」으로 단축('98. 12월부터 시행)
 - 신고후 「15일」이 경과될 때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주류제조자가 신고한 방법으로 주류제조를 할 수 있도록 함
 - 주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주세사무

- 처리규정 제35조 개정
- 4) 기대효과
 - 다양한 주류의 개발 촉진

8. 주류제품별 규격제한의 개선

- 1) 현행제도
 - 주류의 규격인 알콜분 도수를 주종별로 정하여 생산토록 규제
 - 규격제한의 예 : 맥주 25도미만, 탁주 6도이상
- 2) 문제점
 - 다양한 주류의 제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
 - 예를들면, 탁주의 경우 6도미만을 불허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생산되어 제주로 활용되어 왔던 '예주', '감주' 등 2-3도 수준의 저알콜 탁주의 생산이 불가능
- 3) 개선방안
 - 다양한 주류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알콜도수 규제완화('98 시행)
 - 예) 탁주: 6도이상→3도이상
- 4) 기대효과
 - 다양한 주류의 개발촉진과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

9. 국산주류상표 기재내용에 대한 규제 완화

- 1) 현행제도
 - 주류의 상표부착시 9가지 사항을 주상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함
 - 필수 기재사항 : 주류의 종류, 상표명, 제조장명칭 및 위치, 규격, 용량, 용기주입 연월일, 원료용 주류의 명칭·함량, 첨가물의 명칭·함량, 출고가격

- 주류의 상표기재사항에 있어 수입주류는 문자의 크기를 규제하지 않는 반면, 국산 주류에 대하여는 이를 규제
- 2) 문제점
- 국산주류의 다양한 디자인 및 상표개발을 제한하여 경쟁력 제고를 저해
- 3) 개선방안
- 국산주류의 상표에 대해서도 문자의 크기에 대한 규제폐지
 - 필수적 기재사항을 축소하고,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98시행)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8조 삭제, 제51조 개정
- 4) 기대효과
- 다양한 디자인 및 상표개발 촉진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10. 리큐르 원액의 제조 및 사용규제 대폭완화

- 1) 현행제도
- 리큐르원액의 제조에 있어서 원료사용량 및 종류, 원액의 사용비율, 원액의 저장기간 등에 대해 제한
- 예)
- 과일 또는 유실을 원료로하여 담가서 우려내는 방법으로 리큐르를 제조하는 경우 : 매실, 사과등과 유사한 과실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는 95% 주정 또는 알콜분95%로 환산한 주류 200 l 당 170 kg이상
 - 과일 또는 유실을 원료로하여 이를 담가서 우려내는 방법으로 제조한 원액을 사용하여 리큐르를 제조하는 경우 : 제품규격으로 환산한 부피의 50%이상을 원액으로 사용

- 과일 또는 유실을 원료로하여 이를 담가서 우려내는 방법으로 제조한 원액은 90일 이상 보관

2) 문제점

- 주세법상에 리큐르 제조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 리큐르 제조방법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다양한 주류개발을 저해

3) 개선방안

- 주세사무처리규정상의 리큐르 원액제조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완화('98 시행)
- 원료사용량 및 원액사용비율 등은 상표 기재사항으로 표시

4) 기대효과

- 다양한 리큐르의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확대

1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도 개선

1) 현행제도

- 주세 또는 특별소비세 납세대상인 주류나 청량음료 등의 경우 납세병마개가 사용되고 그 제조자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바, 2개업체만으로 지정을 제한

2) 문제점

- '85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2개업체만을 납세병마개 제조업자로 지정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진입제한
- 특히, 플라스틱이나 압축병마개 등의 제조기술이 있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참여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규진입이 불가능
-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에 의한 거래처 분할 등의 경쟁제한 행위 유발
- 병마개 수요자의 입장에서 플라스틱 병마개

나 압축병마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궁극적으로 병마개사용 제품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지장을 초래

3) 개선방안

-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요건을 객관화·투명화하고, 지정대상업체를 확대('98 시행)
- 주세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요건을 정하여 이러한 요건을 갖춘 업체들에 대해서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주류나 음료제조자가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4) 기대효과

- 새로운 납세병마개 제조기술이 있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촉진 및 병마개 제조기술 향상 도모
- 병마개 수요자의 다양한 제품 선택권 부여

12. 주조사 의무고용제도 개선 및 활동 규제 폐지

1) 현행제도

- 주류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두도록 규정
- 주류제조장이 주조사를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토록 함
- 주조사의 임무를 규정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주조사의 근무현황등을 수시점검하고 연구보고서를 받도록 규정

2) 문제점

- 주조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함으로써 주류제조장의 부담초래
- 주조사 근무현황등의 수시점검 및 연구보고서 제출의무 부과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주조사의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초래

3) 개선방안

- 사업자 자율고용('98 시행)
- 주조사 공급을 대폭확대
- 주조사 활동을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정 폐지('98 시행)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0조 및 제151조 삭제

4) 기대효과

- 주류제조장의 의무적인 주조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주조사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주질향상 도모

13.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합리화

1) 현행제도

- 주류판매업 면허와 관련하여 다양한 면허요건을 규정
- 해당 주류제조업자와의 거래약정서 1부 이상 제출
- 지역별로 자본금 규모 및 창고면적 차등화
- 외국주류 판매계약서, 주류수입면허자의 추천

2) 문제점

- 다양한 면허요건이 사실상 주류판매업에의 진입제한 요인으로 작용

3) 개선방안

- 면허제한 요건완화로 자유로운 진입허용
-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 1부이상 제출요건 폐지
- 다만, 탁·약주, 민속주의 경우 2000년까지 유지
- 지역별로 자본금 규모 및 창고면적을 차등화하는 것을 최저수준으로 단일화함
- 외국주류회사와 판매계약이나 주류수입면허자의 추천요건 삭제

4) 기대효과

- 주류판매업 진입을 위한 물적요건을 완

화하되, 인적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면서 유통과정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강화

14. 주류판매업면허 통합

1) 현행제도

-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12종류로 세분하여 종류별·판매자별로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문제점

- 지나친 판매면허 세분화로 판매업자의 사업영역이 제한되어 부실화되는 원인으로 작용
- 대형화, 종합적 관리를 어렵게 하여 주류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제약

3) 개선방안

- 주류판매업면허를 유형별로 통합('98 시행)
 - 주정도매업, 전통주도매업, 일반주도매업, 주류소매업, 주류중개업, 주류수입업 면허 등 6종류로 통합
 - 주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을 개정

4) 기대효과

- 주류면허 통합을 통한 경쟁촉진 및 주류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15. 주류통신판매의 금지개선

1) 현행제도

- 주류제조자 및 도·소매업자가 주류통신 판매하는 것을 금지

2) 문제점

- 주류제조업체가 신종 판매형태인 통신판매를 활용하여 주류판매를 하는 것이 불가능
- 특히 유통체계가 취약한 민속주·전통주 제조업체들의 판로제한

- 주류구입시 소비자들의 편리성 제한

3) 개선방안

- 판매창구를 한정하여 민속주·전통주에 대한 통신판매 허용('98 시행)
 - 통신판매창구를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제한
 - 상대방의 신분확인등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방지 장치 마련

4) 기대효과

- 유통체계가 취약한 민속주·전통주 제조업체들의 판로확대와 주류구입에 따른 소비자의 편의제고 등이 가능

16. 주류제조·판매업자의 제조장·판매장 이전시 사전신고 및 허가제의 개선

1) 현행제도

-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군의 행정구역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법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판매장을 이전하는 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인 경우와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판매장이전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문제점

-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물류 및 사업입지 타당성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경쟁력 약화 초래

- 판매장 이전시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사실상 공급구역을 제한하는 결과 초래

3) 개선방안

- 신고서 제출기간을 “30일전”에서 “15일전”으로 단축('98 시행)
 - 신고후 15일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
 - 주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 주류판매장을 동일 시·군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허가제를 2000년말까지 사전신고제로 전환('99 개정)

4) 기대효과

-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제조장 및 판매장의 입지 선정

17. 주류판매업자의 주류판매가격 신고제 폐지

1) 현행제도

- 종합주류도매업자, 수퍼연쇄점 본·지부, 탁주도매업자가 주류가격을 변경(신규를 포함)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일 2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정밀검토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거부하며, 수리된 주류가격은 해당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시 참고자료로 활용

2) 문제점

-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로서 규제법정주의에 배치
- 주류판매업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저해하고, 주류판매업자간 가격경쟁을 제한
- 주류판매가격의 신고과정에서 사업자들

이나 사업자단체를 통한 가격결정 공동행위를 유발하는 계기를 조성

3) 개선방안

- 주류판매가격 신고제도를 폐지('98 개선)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제7항 및 제8항 삭제

4) 기대효과

- 주류판매업체간 가격경쟁을 통한 경영효율 제고
- 주류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결정 공동행위의 억제

18. 전통주 판매제한 완화

1) 현행제도

- 전통주를「민속주」와 「농민·생산자단체주류(이하에서 “특산주”라 약칭함)」로 구분
- 특산주의 경우 도매면허제도가 별도로 없고, 제조자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경로를 제한
- 민속주도매업자의 경우 수퍼·연쇄점의 본·지부에는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나, 동 가맹점에 직접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

2) 문제점

- 주류제조업 면허를 허용하면서도 특히, 특산주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제품판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민속주도매업자의 경우 수입주류도매업자에게도 허용하는 수퍼연쇄점가맹점에 대한 직접판매를 제한하므로 판로확대를 저해

3) 개선방안

- 민속주와 특산주를 함께 취급하는 전통

주도매업면허제도 도입('98시행)

- 주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개정
- 일정규모(예: 연간 생산량 5kl)미만의 소규모 특산주제조자가 생산한 주류는 민속주제조자가 생산한 주류와 같이 수퍼·연쇄점이나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직접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98 시행)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제4항 개정
- 민속주(특산주를 포함)도매업자가 수퍼·연쇄점가맹점에 직접판매할 수 있도록 함('98 시행)

4) 기대효과

- 민속주등의 전통주류에 대한 다양한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류생산을 촉진하고, 전통주류 제조업체간 경쟁여건 조성
- 소비자의 다양한 주류선택권을 광범위하게 보장

19.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제도 폐지

1) 현행제도

- 주류업단체는 주류업자의 생산, 가공, 주류의 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공동판매에 관한 사업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 문제점

- 주류제조자 및 판매업자의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제한 등의 문제발생 소지

3) 개선방안

- 공동행위의 우려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되, 주류공병의 회수를 효율화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은 허용('99 시행)
- 주세법 제45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삭제

4) 기대효과

- 사업자간의 경쟁촉진을 통한 경영효율화 촉진

- 주류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결정 공동행위의 억제

20. 사업자의 단체설립 및 가입 제한제도 개선

1) 현행제도

- 주류제조업자가 주류제조업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류별로 조직하여야 함
- 주류제조업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업단체 이외에는 별도로 주류업체에 관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할 수 없음

2) 문제점

- 사업자단체의 설립, 가입 및 탈퇴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현행제도는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것임
- 기존의 허가된 주류제조업협회가 주류별로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1개업체가 여러 주류제조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류종류도 다양화되고 있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

3) 개선방안

- 제조주류에 관계없이 단체조직이 가능하도록 개선('99 시행)
-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자유화('99 시행)
- 주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 삭제

4) 기대효과

- 사업자단체로 인한 사업활동 제약을 완화

IV. 맺는 말

- 국세청에서는 세수확보 측면에서 주류의 제조·유통중심의 관리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전개해 왔으나 산업 및 사회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행태가 퇴행적인 음주문화로 기울지 않고 국민건강 측면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주세행정 운용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입장에 있으며

금번 규제개혁도 이와 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제조단계는 규제를 완화하되 주류의 오·남용을 막고 세원을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서 유통부문의 규제는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였음.

If you haven' t had at least a slight poetic crack in the heart, you have been cheated by nature.

만약 당신의 가슴속에 사소한 시적 정서의 틈이라도 가져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자연에게 속아온 셈이다.

- Phyllis Battelle-